

大邱直轄市達西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條例 중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 9. 18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8. 31
- 다. 회부일자 : 92. 9. 2
- 라. 상정일자 : 92. 9. 1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립공공 도서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립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교육 시설을 육성하는 의미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교육 시설인 시립공공 도서관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육성하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첨부 : 개정조례(안) 1부

大邱直轄市達西區社會教育施設에 대한區稅課稅免除 條例中改正條例(案)

제2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기간)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별표 6) 농수산물 재배등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

가. 농산물

구 분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종류	오 염 기 준	검사결과
토 양 (논의 경 우에 한 한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생산된 현미중의 카드뮴 함량이 1mg/kg 이상	1.606mg/L
	2. 동 및 그 화합물	토양중의 동함량이 125mg/kg 이상	
	3. 비소 및 그 화합물	토양중의 비소함량이 15mg/kg 이상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 관련)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3,000㎡ 미만		
	항 목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mg/ℓ)	화학적 산소 요구량(mg/ℓ)	부유물질량 (mg/ℓ)
나. 지 역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검 사 결 과		37.20	48.71	21.50